IBK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대출

소상공인 스마트화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대출상품

상품요약

상품특징• 소상공인 스마트화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대출상품계약기간(상세)• 운전자금 : 최대5년(보증부대출 : 최대 8년) / 시설자금 : 최대15년 ※ 단, 보증서 담보대출은 보증서 상의 보증기한 이내이자계산방법•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•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방법 :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있음•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: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,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.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'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'과 '신용정보 관리규약'에 의해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상품혜택

우대혜택 ● 『소상공인 스마트化 컨설팅』우선 지원

•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: 해당사항 없음

대출정보

대출한도(요약)

 본 상품은 별도의 상품별 한도가 없으며, 은행의 내부심사과정에 따라서 한도를 책정함. ※ 단, 보증서 담보대 출은 보증서 상의 대출예정금액 이내

대출금리(상세) ● 이자부과시기 : 매월

- 최저 연 5.33% ~ 최고 연 6.33% (2022.12.12.현재)
 * 기준금리 (연 4.02%) + 가산금리(연 2.31%p) 감면금리(연 0~1.0%p)
 ※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5천만원/대출기간 1년/소기업 신용등급 BBB+/고객기여도 A/90% 보증서 담보/ 변동금리(3월)/만기일시상환/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,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,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.
- 변동금리: 『매 주기별(KORIBOR 3,6월물) 금리 변동』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
- 고정금리: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,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.co.kr)에서 고시하는 중 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(해당일수)의 전·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
- 스마트 상점 : AR·VR, 무인주문시스템, 스마트 오더(배달앱, BOX POS 등), IoT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여상품· 서비스를 판매하는 소상공인
- 스마트 공방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'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'에 선정된 소상공인
- 스마트 기술 보유기업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스마트 기술 보유기업
- 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 : 온라인 스토어를 통한 물품 판매 실적 보유 소상공인
-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수료기업 : IBK기업은행과 이커머스 기업 등이 공동 운영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기업
- 기술보증기금의 '소상공인 스마트화 금융지원 업무협약'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
- 만기일시상환,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 ※ 여신만료일(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)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(법정공휴일, 대체공휴일,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)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.
- 중도상환해약금: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금액 (중도상환금액×중도상환해약금 요율×대출잔여일수/대출기간) 단,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.

<중도상환해약금 요율>

상환방식

대출대상

중도상환해약금

(단위:%) 고정금리 변동금리

부동산담보 1.4 1.2 부동산담보외 0.9 0.8

※ 한도약정수수료: 약정금액의 0.2%(수시로대출의 경우에 한함)

부대비용

• 인지세: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

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

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

※ 보증료 : 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.

- 『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』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: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,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『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』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: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 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『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 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 』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: 분할상환원금(또는 분할상한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,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: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 - 연체이자율은 [이자율 + 연3%]로 적용합니다.
 -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%, 그 외는 13%로 합니다.

연체이자(지연배상금)